

의안번호	2214265
의 퇴 인	임호선의원
회 답 일	2026.3.12.
추계번호	25B629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대상자 수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2027년 6억 8,400만원~18억 6,700만원, 2031년 12억원~32억 7,400만원으로 향후 5년간 총 46억 2,000만원~126억 800만원(연평균 9억 2,400만~25억 2,200만원) 이상으로 추계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 본 추계서에서의 시나리오1은 최근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집행현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하였으며, 시나리오2는 예술인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집행현황을 토대로 사업대상자를 산출함

[표 1]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등 (시나리오1)	684	787	906	1,043	1,200	4,620	924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등 (시나리오2)	1,867	2,149	2,473	2,845	3,274	12,608	2,522

주: 1. 추계금액은 경장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장래에 발생할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및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의 제도 설계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7조의 11(자영업자·농어업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농어업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함.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제2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77조의 12(준용) 신설	자영업자·농어업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함. 이 경우 “근로자”는 “자영업자·농어업인”으로, “고용된 날”은 “사업의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사업이 개시된 자영업자·농어업인”으로 봄(제1항) 자영업자·농어업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을 준용함.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 중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은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요건”으로 봄(제2항) 자영업자·농어업인의 피보험자격확인·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98조까지, 제99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이 경우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각각 “제5장의4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사업주”는 각각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근로자”는 각각 “자영업자·농어업인”으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4장”은 “제5장의4”로,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제5장의4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봄(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7조의11(자영업자·농어업인의 출산전후급여등) 신설	×	• 미첨부(농어업인)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안 제77조의12(준용) 신설	○	• 공식추계(자영업자) - 본문 참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자영업자·농어업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서 자영업자·농어업인까지 확대됨
 - 출산전후 급여 : (현행)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 (개정안) 자영업자·농어업인 추가
- (농어업인 고용보험) 현행법에 따라 농림어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며, 농림어업 사업자등록자 및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한 자는 자영업자의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¹⁾
 - 따라서 농림어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며, 농림어업 사업자등록자 및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한 자의 경우는 자영업자의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님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법에 근거하여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던 자영업자의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농림어업인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시행으로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어업인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근로자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비교

구분	근로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농림어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포함)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농림어업 사업자등록자, 사업자등록이 없으나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한 자 포함)
가입형태	의무가입	임의가입
주급여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실업급여
보험료	고용주 1/2, 근로자 1/2	자영업자 본인 납부 (소득 수준에 따라 등급 선택)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참고로, 2024년 6월 이전까지는 법인사업주와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주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며, 경영주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됨

- 즉, 개정안은 농어업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등(이하 “농어업인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대상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이로 인한 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농어업인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자의 지급 규모와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며, 농어업인의 경우 농한기, 농번기, 휴어기 등 노동 환경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휴직 및 휴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나, 관련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또한, 현행법에 따라 자영업자의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의 가입 실적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방법의 경우 2025년 기준 105명에 불과하여 장래에 발생할 행태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따라서 농어업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

[표 3] 자영업자 중 농어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 2020~2025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농어업인	34	36	36	40	62	105

주: 연도말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농림어업 자영업자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자

자료: 고용노동부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²⁾으로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이하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자영업자에 대해 출산전후급여 등이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표 4]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가율
노무제공자	—	432,395	735,408	791,083	826,864	24.1%
예술인	329	49,459	50,797	49,126	46,993	-1.7%
자영업자	30,629	36,859	42,643	47,604	53,705	15.1%

주: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7월부터 적용 및 시행되어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을 중복제거한 순인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2021~2024년까지임

2) 예술인은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로 연평균 증가율은 2021~2024년까지임

3) 자영업자는 연도 말 기준 가입자 수

자료: 고용보험 DB, 고용노동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 출산전후휴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음
 - 자영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휴업을 구분해야 하므로, 자영업자의 '휴직 및 휴가'에 대한 개념 정립 및 명확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관련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음
 - 다만, 본 추계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토대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현황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실적 및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구조가 추계기간(2027~2031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자영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기준보수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7등급의 기준보수 중 원하는 등급을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진될 자영업자 출산전후휴여등의 지급단가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자영업자출산전후휴여 대상자 수에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
- (대상자 수) 자영업자의 경우 장기간의 휴업이 사업 유지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어 자영업자 출산전후휴여 지급에 따른 행태 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본 추계서의 대상자 수는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의 출산전후휴가 사용현황을 준용하여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추산
 - 추계기간 동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장래에 발생할 자영업자 출산전후휴여 수급자의 비율은 2024년

기준 노무제공자³⁾ 및 예술인⁴⁾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비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수의 비중을 준용하여 산출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 형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출산전후 시기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는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가 변화할 수 있으나, 연평균 증가율 이외의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표 5]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수: 2020~2024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무제공자	—	18	392	888	909
예술인	—	26	61	115	141

주: 1)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7월부터 적용 및 시행되어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인원을 중복제거한 순인원임

2) 예술인은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

3) 자영업자는 연도 말 기준 가입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표 6] 고용보험 가입자 수 대비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 수의 비중: 2020~2024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노무제공자	—	0.00%	0.05%	0.11%	0.11%
예술인	—	0.05%	0.12%	0.23%	0.3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출

[표 7]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 수급자 수(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자 수(A, 명)		81,833	94,167	108,360	124,692	143,486
시나리오 I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 수(B1=A×0.1%, 명)	90	104	119	137	158
시나리오 II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 대상자 수(B2=A×0.3%, 명)	246	283	325	374	431

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본 추계에서의 추정치를 상회 또는 하회 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3) 제77조의9(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4) 제77조의4(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지급단가) 2026년 예산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단가(83,913원)를 적용하되, 동 금액이 추계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지급기간) 90일
 - 현행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90일에 대해 지급하면서 다태아 및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지급 기간을 확대(다태아 120일, 미숙아 100일)⁵⁾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표 8]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시나리오 I	대상자 수(A1, 명)	90	104	119	137	158
	지급기간(B, 일)	90	90	90	90	90
	1일 지원단가(C, 원)	83,913	83,913	83,913	83,913	83,913
	추가재정소요(D1, 백만원)	679	782	900	1,035	1,191
시나리오 II	대상자 수(A2, 명)	246	283	325	374	431
	지급기간(B, 일)	90	90	90	90	90
	1일 지원단가(C, 원)	83,913	83,913	83,913	83,913	83,913
	추가재정소요(D2, 백만원)	1,854	2,134	2,455	2,825	3,251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장래에 발생할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및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의 제도 설계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또한, 개정안은 유산·사산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영업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유산·사산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자영업자에 대한 유산·사산급여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예산안 기준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대비 유산·사산휴가급여의 비중(0.7%)을 준용하여 산출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②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가목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 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90일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②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제104조의 9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한다.

[표 9]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 등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시나리오 I	자영업자출산전후급여(A1)	679	782	900	1,035	1,191
	자영업자유산·사산 급여(B1)	5	5	6	7	8
	추가재정소요(C1=A1+B1)	684	787	906	1,043	1,200
시나리오 II	자영업자출산전후급여(A2)	1,854	2,134	2,455	2,825	3,251
	자영업자유산·사산 급여(B2)	13	15	17	20	23
	추가재정소요(C2=A2+B2)	1,867	2,149	2,473	2,845	3,27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장래에 발생할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적 변화 및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의 제도 설계에 따라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5.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할 수 있으며, 본 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자영업자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한 지급 요건, 지급 수준, 지급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될 경우 본 추계에서의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 형태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